

대전참여자치연대 지방재정 좌담회 자료

2010년 9 월 29일

발표자 : 원구환(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이하의 자료는 2009년 9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 및 이재선 의원 주관 세미나(대전 서구문화원)에서 발표한 내용임

1. 지방재정의 본질

□ 정책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 정책의 실질적 구현은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으며 재정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예산 형태로 구체화
- 예산은 정부의 상호 연관되고 복잡다기한 자원배분을 나타내 주는 유일한 문서로서 화폐리는 단일 척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산출로 간주할 수 있음(Danziger, 1976: 335-336).

□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구조

-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체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됨
-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도와 시군 간에는 재정보전금을,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에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설치하고 있음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갈등 및 조화

-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은 모두 대규모적이고 활발한 재정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단지 공공재정을 수량적으로 분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각이 지니는 본래적인 기능에 따라 담당할 분야를 달리 하면서 모두 협조해야 할 관계에 있음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 가속
-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 이외에 지방 간 격차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 기초 간 재정격차는 시민의 보편적 서비스 향유권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

□ 재정격차의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보편적 서비스 향유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보편적 서비스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상호의존하려는 노력이 필요

2. 지방재정의 현황

□ 지방예산의 규모

- 2010년 지방예산은 순계 규모로 139조원으로 전년대비 당초예산 순계 137조원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2009년 최종예산 순계 156조원 대비 10.8% 감소

※ 지방예산의 규모(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당초예산(A)	111,986,422	124,966,562	11.6%	137,534,905	10.1%	139,856,494	1.7%
최종예산(B)	128,036,585	144,453,561	12.8%	156,702,876	8.5%		
B/A(%)	14.3%	15.6%		13.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자치단체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3,422,940백만원(81.1%)으로 2009년 당초예산 109,451,011백만원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33,554백만원(18.9%)으로 2009년 당초예산 28,083,894백만원 대비 5.9% 감소

※ 자치단체 회계별 예산규모(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2006년	101,352,242	115,472,172	78,687,723	89,923,190	22,664,518	25,548,983
2007년	111,986,422	128,036,585	86,520,933	99,814,723	25,465,489	28,221,862
2008년	124,966,562	144,453,561	98,444,623	115,312,526	26,521,939	29,141,035
2009년	137,534,905	156,702,876	109,451,011	125,775,864	28,083,894	30,927,012
2010년	139,856,494	-	113,422,940	-	26,433,554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약 89조원 정도로 전체 자치단체 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36.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의 예산은 전체 자치단체의 4.5%에 불과

※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증(Δ)감	
	당초	구성비	당초	구성비	당초	구성비
계	139,856,494	100.0	137,534,905	100.0	2,321,589	1.7
시·도·본·청	89,211,149	63.8	85,301,936	62.0	3,909,213	4.6
시	30,371,549	21.7	31,512,461	22.9	△1,140,912	△3.6
군	13,974,230	10.0	14,368,074	10.4	△393,844	△2.7
자치구	6,299,566	4.5	6,352,434	4.6	△52,869	△0.8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및 세출 괴리

- 2010년 예산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3%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83.4%)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전남 고흥군(8.6%)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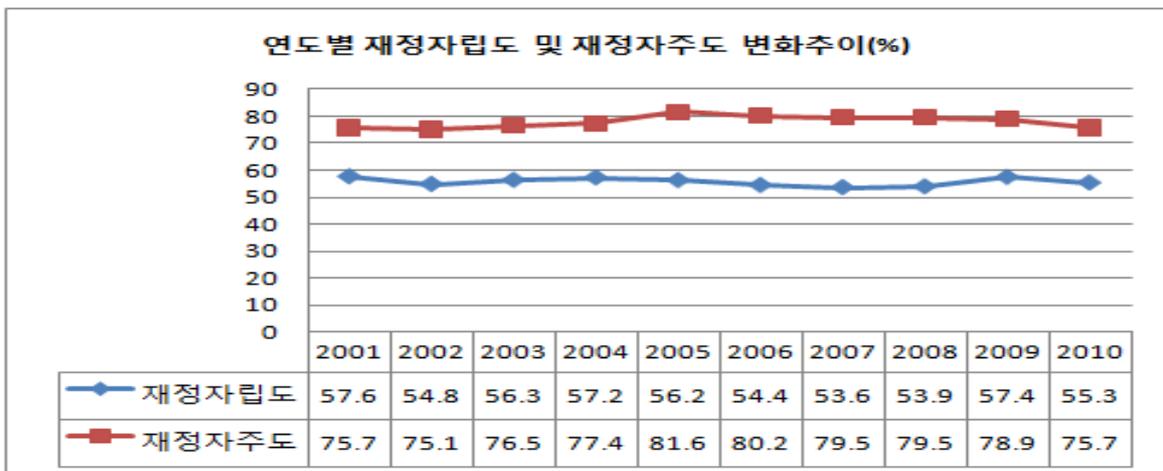
※ 2010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구분	특별시	광역시	사·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3.4	56.3	31.6	40	18	35.4
최고	83.4	70	59.3	67.4	48.6	82.9
(단체명)	서울본청	인천본청	경기도본청	경기성남시	울산울주군	서울중구
최저	-	43.2	11.5	9.3	8.6	11.4
(단체명)	-	광주본청	전남본청	전북남원시	전남고흥군	부산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자치단체의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10개년 평균 55.7%를, 재정자주도는 10개년 평균 78%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자주도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연도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 민선자치제도 시행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 이양에도 불구하고 세원 이양은 전무하여 지방 재정 분권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재정사용액은 국가와 지방 비율이 4:6인 반면 세입 비율은 8:2로서 세출 및 세입 괴리도가 심각한 수준

※ 주요국의 국가와 지방 간 세출세입 비중(%)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지방사용액	40:60	32:68	37:63	71:29	29:71	69:31
국세:지방세	80:20	55:45	60:40	94:6	51:49	78:22

□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변동(2008~2012년)

- 중앙정부의 감세조치(2008년)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는 30조 1,74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6조 2,784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13조 6,0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 10조 2,925억원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증가는 4조 4,355억원(2010~2012년)으로 추저오디는데,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포함) 2조 8,646억원, 지방소비세로 인한 연간 세입 순증 1조 4,785억원
-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효과는 세입 순감소 25조 7,387억원(2008~2012)으로 추정되며, 2010년 이후 매년 6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변동(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감세정책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소계(A)	-13,599	-47,264	-79,329	-80,547	-80,547	-301,741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	-	24,334	24,334	24,334	73,002
	지방교부세	-	-	-9,549	-9,549	-9,549	-28,647
	소계(B)	-	-	14,785	14,785	14,785	44,355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A+B)		-13,599	-47,264	-64,544	-66,218	-65,762	-257,3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 감세정책은 내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소비세 세입규모가 지방교부세 배분비율보다 낮을 경우 지방재정의 세입 불균형이 발생(2010년 이후 약 6조원 이상의 불균형 발생)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의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비세 수도권 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55.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감세로 인한 충청권 지역의 지방재정 감소액 추정치 2008~2012년(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 감세		종부세 감세	지방세입 감소합계
	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대전	-1502	-1621	-4177	-7300
충남	-2230	-11832	-7165	-21227
충북	-1124	-9669	-2671	-13464
계	-4,856	-23,122	-14,013	-41,9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3. 대전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

□ 대전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 대전시 및 자치구의 지방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2010년 기준으로 동구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대전 5개 구 중에서 높은 수준임
-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동구가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대전시 및 자치구의 재정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대전시 및 자치구의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008년		2009년		2010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대전시 본청	61.2	74.3	54.5	69.9	52.1	67.7
동구	17.8	46.4	16.4	39.0	12.2	33.0
중구	21.4	50.2	17.7	40.8	18.4	40.2
서구	26.7	50.0	26.4	45.0	22.5	41.6
유성구	39.1	56.1	35.4	48.0	32.8	45.7
대덕구	18.0	43.0	18.8	40.2	18.9	37.7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 2010년 기준으로 대전시 자치구 평균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143천원으로 전국 평균 1,235천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690천원으로 전국 평균 2,947천원보다 낮음. 따라서 대전시 자치구의 경우 주민 1인당 143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690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전적으로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음(중앙의존적 재원구조는 국세와 지방세(8:2)의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음)

※ 2010년 기준 대전시 및 자치구의 주민1인당 세입세출예산액

자치단체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천원)	주민1인당 지방세수입액 (천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천원)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천원)	인구수 (09년말기준, 명)
전국평균	1,235	962	273	2,947	49,773,145
대전본청	744	667	77	1,359	1,484,180
대전구평균	143	77	66	690	1,484,180
대전동구	107	51	56	882	246,116
대전중구	133	64	70	727	264,035
대전서구	113	61	52	503	499,297
대전유성구	226	136	90	689	266,585
대전대덕구	163	85	79	865	208,147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 대전시 자치구의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시 자치구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지방세 수입+세외수입), 의존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시비 보전금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수입이 국가로부터의 의존수입에 근거하고 있어 자치재정능력을 상실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지방세체계가 개편되는데, 자치구의 경우 보통세로 면허세와 재산세를,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세 개편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보유하게 됨

※ 지방세 체계의 개편

	특징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	도입시기	과세유형	세율구조
	유형							
보통	취득세	○	○			1952	재산과세	비례세
	등록면허세		○		○	1976(1954)	재산과제	비례(정액)
	레저세	○	○			2001	소비과제	비례세
	주민세	○		○		1973	소득과세	정액(비례)
	재산세			○	○	1961	재산과세	누진세
	자동차세	○		○		1961	재산과세	정액세
	담배소비세	○		○		1989	소비과세	정액세
	지방소비세	○	○			2010	소비과세	비례세
	지방소득세	○		○		2010	소득과세	비례세
목적	지역자원시설세	○	○			1961(1992)	재산과세	비례세
	지방교육세	○	○			2001	기타과세	부가세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분법(2011년부터)

- 자치구의 세목은 재산과세적 성격이 강하고 정액세이므로 과세의 신장율이 높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소득 및 소비탄력성이 낮아 국세에 비해 세원이 빈약
- 2011년 지방세 구조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개편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교부세 조정, 도와 시군 및 특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조정 등이 필요1)

1) 대전시의 경우 2010년도 특별교부금을 합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의 68%에 해당하는 1,790억 원이 구에 내려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2011년의 경우 일부 세제가 개편돼 대전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5개 구청은 재원조정교부금의 현행 68% 유지나 최소한의 감소를 주장했고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최소한의 변동으로 못박을 방침이다(뉴시스, 2010.8.4).. 대전의 교부금 조정률 68%는 서울 50%, 인천 50%, 부산 55%, 대구 56%, 광주 71%, 울산 58%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인데다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비율을 재량껏 정할 수 있다(대전일보, 2010.8.2).

□ 대전시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외수입은 회계성질별로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수입이 일정한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즉 실질적 세외수입은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회계연도마다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인데 비해, 명목적 세외수입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

※ 세외수입의 유형(안용식·강동식·원구환, 2006: 453)

회계성질 \ 수입 일정성	실질적 세외수입	명목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최협의 개념)	입시적 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부금 및 기금, 전입금·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특별회계 세외수입 (특히 지방공기업)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상하수도, 지하철, 주택,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기타특별회계	이월금, 과년도수입, 전입금 융자금, 잡수입

- 대전시와 자치구의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2010년 기준으로는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음

※대전시 및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현황(순계기준,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대전 본청	752,544	642,903	612,399	475,794
대전 동구	43,359	36,120	37,120	16,184
대전 중구	31,011	25,294	29,609	20,786
대전 서구	43,085	44,883	46,622	25,617
대전 유성구	131,556	62,206	74,599	54,704
대전 대덕구	21,005	24,877	27,677	15,344

* 2007~2009년은 최종예산, 2010년은 당초예산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 대전시 자치구의 의존수입 현황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을 배분하는데, 2007년에는 지방세수입의 22.1%, 2008년에는 25.2%, 2009년에는 30.4%를 교부하였으며 2010년에는 25.8%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음

※ 대전시의 자치구 시비보조금 추이(백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전 지방세 수입	933,201	100.0%	958,487	100.0%	882,606	100.0%	989,408	100.0%
시비보조금 등 합계	206,170	22.1%	241,534	25.2%	268,376	30.4%	255,124	25.8%
동구	40,771	19.8%	50,155	20.8%	53,646	20.0%	53,609	21.0%
중구	33,795	16.4%	36,597	15.2%	46,872	17.5%	45,238	17.7%
서구	44,831	21.7%	52,495	21.7%	60,423	22.5%	56,664	22.2%
유성구	41,311	20.0%	50,376	20.9%	50,822	18.9%	47,755	18.7%
대덕구	45,462	22.1%	51,911	21.5%	56,613	21.1%	51,858	20.3%

*2009년까지는 최종예산이고, 2010년은 당초예산 기준임(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 대전시 자치구의 세출구조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시 및 자치구의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본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함

※ 2010년 기준 대전시 및 자치구의 인건비 비중(백만원, %)

단체별	예산액 (A)	자체수입 (B)	지방세 (C)	인건비 (D)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		
					총예산	자체수입	지방세
					(D/A)	(D/B)	(D/C)
전국계	146,661,840	62,201,286	47,878,513	13,378,488	9.1	21.5	27.9
대전본청	2,017,092	1,104,119	989,408	140,439	7.0	12.7	14.2
대전동구	217,000	26,446	12,558	32,014	14.8	121.1	254.9
대전중구	191,868	35,214	16,860	36,201	18.9	102.8	214.7
대전서구	251,135	56,580	30,594	38,006	15.1	67.2	124.2
대전유성구	183,800	60,364	36,339	26,259	14.3	43.5	72.3
대전대덕구	180,000	33,961	17,611	26,088	14.5	76.8	148.1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 사회복지비 비중의 가중

- 사회복지비는 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8개 부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사회보장지출은 지방재정(특히 자치구)에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최병호, 2009).
-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유성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0년 기준으로 동구, 중구, 서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음

※ 대전시 및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단위: 백만원, %)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사회복지	비중	예산	사회복지	비중	예산	사회복지	비중
대전 본청	1,704,445	392,603	23.0	1,920,005	478,009	24.9	2,013,092	553,657	27.4
동구	188,700	85,579	45.4	204,230	98,909	48.4	217,000	114,844	52.9
중구	165,445	73,896	44.7	172,980	86,506	50.0	191,868	100,468	52.4
서구	216,423	102,176	47.2	229,149	112,638	49.2	251,135	137,190	54.6
유성구	154,000	45,500	29.5	170,000	53,920	31.7	183,800	65,445	35.6
대덕구	154,000	64,824	42.1	161,300	72,163	44.7	180,000	87,157	48.4

4. 대전시 자치구의 예산불균형 해소방안

1) 세입구조상의 해소방안

□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상향조정

-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GRD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재원배분 시 지역간 표준편차는 3,262억원에 달하지만 GRDP 비중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할 경우 표준편차는 1,820억원(오병기, 2009: 21).
-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여 전국을 3개(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100, 200, 300의 가중치를 부여 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중치를 3단계로 구분하지 말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 중 일부(매년 3,000억원, 총 10년간)을 출연할 예정이지만, 지역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위해 출연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장기저리의 자금 용자방식으로 운영

□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 개편(김대영, 2010)

- 지방소득세는 현행의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세목을 신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세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할 예정
- 현행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법인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10%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의 과세 표준을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개인소득, 법인소득으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세율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변경하더라도 적정한 초과 누진 세율구조로 개편한다면 납세의 무자의 조세부담, 지방세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수는 중앙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인하 등 제도개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 과세표준 개편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고 탄력세율 적용 등 세율결정권이 확대될 수 있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확충될 수 있음

□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 조정교부금은 대전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조정교부금의 기준(68%)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개편됨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요약

목적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재원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 연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유형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을 보통교부금, 100분의 10을 특별교부금
산정	<input type="checkbox"/> 보통교부금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미달액(재원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 보통교부금 총액이 재원부족액 합산액에 미달할 때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조정율 = 보통교부금의 총액 / 각 자치구 재원부족액의 합산액) <input type="checkbox"/>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예산편성 후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2이상의 자치구 중복사업으로 재원 분쟁이 있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대상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필요

법령	내용
지방재정법 제29조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소비세의 재원의 일부를 시군에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173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시세의 일부만이 자치구에 교부
지방자치법시행령 117조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	지방재정법 제2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117조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재원을 자치구에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 세외수입 중 지방공영개발사업의 개선

- 지방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개발공사가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의 운영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권한규정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에 비하여 토지 등의 수용취득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 법령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위탁되어 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지방개발공사에는 대집행 권한이 위탁되어 있지 못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89조(대집행)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국가공기업 설치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개발공사는 토지수용 재결 후에도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전 토지 등의 보상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민도 향상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집단민원이 수시 발생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하의 민선단체장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직접 대집행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 따라서 개발사업의 공정율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으로써 추가 손실비용의 발생을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경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공기업 수준의 실질적인 권한 위탁으로 제도개선이 요구

※지방개발공사 개발사업 중 대집행 권한 위탁 방안

법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4제2항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세외수입 중 도시철도운영사업의 개선

- 7개 특광역시외의 경우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가 가중되고 있음. 즉 무임수송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27조(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에관한법률 제58조(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인데, 장애인복지법만 강행 규정이고 노인복지법 등 나머지는 모두 임의규정

※ 전국 도시철도 무임손실 현황(2009년말 기준, 억원, 백만명)

구 분	총 계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수송인원	2,159	1,078	598	264	112	56	17	34
무임인원	326 (15.1%)	136 (12.6%)	83 (13.9%)	62 (23.4%)	26 (23%)	6.6 (11.8%)	5.3 (30.6%)	7.7 (22.5%)
당기순손실(A)	8,282	2,373	2,140	1,029	1,709	328	286	417
무임손실액(B)	3,377	1,382	837	724	245	60	53	77
비율(B/A)	41%	58%	39%	70%	14%	18%	19%	18%

자료: 각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 2009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전국 평균은 41%이며 수도권 47%, 비수도권은 32%로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이 무임수송 손실로 원인제공자인 정부의 손실보전이 시급함.
- 철도공사의 경우, 2003년「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정을 통해 매년 무임수송 손실분의 일정액을 국비 지원받고 있음('09년 기준 무임수송 손실액 1,132억원중 757억원 지원(79%))
- 현재 운영 중인 코레일공항철도(주)와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도 정부와 직접 맺은 운영협약을 통해 무임 손실분을 포함,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전받고 있음

2) 세출구조상의 해소방안

□ 사회복지비 증대에 따른 자치구 부담비율 조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데(111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사업명(예시)	현행		비고
	시	구	
생계급여	50	50	세목이 한정된 자치구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주거급여	50	50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50	50	
경로연금	70	30	
영유아보육사업	50	50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 경상경비지출의 최소화 및 이월제도 활성화

- 행정운영경비는 자치단체 총 예산 중에서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및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을 의미하는데,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전시 및 자치구의 연도별 행정운영경비 비중(%)

	2010	2009	2008
전국평균	16.7	17.0	18.4
대전본청	9.3	9.5	10.6
대전구평균	20.1	21.8	25.2
대전동구	19.3	20.4	24.8
대전중구	23.5	23.2	26.4
대전서구	19.9	22.5	25.2
대전유성구	19.0	22.5	26.1
대전대덕구	18.8	20.7	23.3

-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절감을 최한 유도하고, 예산절감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비합리적인 지출행위 완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연말에 집중되는 비합리적 지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월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토록 유도

□ 자치단체 기금 관리의 합리화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1월 기준으로 대전의 기금수는 60개(3,371억원), 충북은 111개(3,464억원), 충남은 160개(4,5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타 기금과 통합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현황(단위 : 개/억원)

시도별	기금수	조성액	%	시도별	기금수	조성액	%	시도별	기금수	조성액	%
총 계	2,176	203,250	100	대 전	60	3,371	1.7	전 북	172	3,713	1.8
서 울	289	115,419	56.8	울 산	34	1,609	0.8	전 남	174	4,604	2.3
부 산	111	7,395	3.6	경 기	349	30,484	15.0	경 북	179	6,362	3.1
대 구	59	1,414	0.7	강 원	164	5,352	2.6	경 남	183	8,185	4.1
인 천	70	4,452	2.2	충 북	111	3,464	1.7	제 주	18	1,885	0.9
광 주	43	1,005	0.5	충 남	160	4,536	2.2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3) 지방제도상의 해소방안

□ 재정파산제도의 도입여부

- 재정파산제도는 우리의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정부의 관료가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0년 5월 26일자로 발표한 자료(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49명에게 질의서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23명(4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은 19명(38.8%)로 나타났음
- 찬성의견은 주로 선심성 예산 낭비 방지, 책임경영 및 건전 경영, 지방재정 위기 예방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는데 비해, 반대의견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에서 파산제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파산제 도입 이전에 세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
- 파산제도의 도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현행 지방재정 구조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위기 진단지표를 재구축하여 사전에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의 강화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 규정(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1994년 지방재정법 개정(1994. 12. 24)으로 도입되어 1996년에는 8개 지표, 1997년에는 3개 분야(재정능력, 재정운영, 재정노력) 18개 지표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내무부훈령 제14호(1998. 10. 19)로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제정되어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가 본격화

※ 2009년 12월말 시행된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분석지표
재정건전성	안정성	통합재정운영수지, 경상비용비율, 지방채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성장성	자체세입증감율, 일반순자산증감율
재정효율성	생산성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자체세입징수율, 자체세입체납징수율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예산집행률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재정분석편람」에서 재구성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 제55조 제2항), 재정진단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밖에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지방재정법 제57조).
-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패널티: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 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동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4항).
- 재정진단결과에 대한 패널티 수준이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만 권고하고 있어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 권고가 아닌 강제 이행조건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방재정분석지표 중에서 재정건전성 중 안정성의 지표를 강화하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연계된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강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0년 5월 26일자로 발표한 자료(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49명에게 질의서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43명(87.8%)이 찬성하였음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시에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은 예산 심의의결에 국한되며 주민의 참여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
-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100여개의 자치단체가 운영(행정안전부 내부자료)중이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임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을 강제 규정²⁾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³⁾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노력 제고(이영희, 2010)

- 2011년부터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조례 감면을 남용할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지방교부세 산정 요소인 기준재정수입을 동시에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감면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게 됨(이영희, 2010)
-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이용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자체수입증가율, 지방세 징수노력도에 대한 지표 가중치를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태임

3) 런던시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시민의 접근이 차단되어 왔던 대규모 데이터를 최근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혁명을 추진하였는데, 2010년 1월 29일부터 런던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store) 홈페이지 (<http://www.london.gov.uk>)에서 공개하고 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0.2.1.)

5. 결론

□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성

-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실증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음(원구환, 2010)
- 그러나 재정분권화의 정당화 논거는 단순히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질적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사무이양과 재정이양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예산과 정책의 불가분성

- 정책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예산과 연계되지 못한 정책은 구현되기 어려우며 정책의 실질적 구현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격차가 크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행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는 지역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는 곧 국가의 역할 한계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국가는 지방과의 공생공존적 관계에서 적절한 재정부담을 감내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공생관계 모색

- 지방재정의 위기는 단순히 행재정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궁극적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화 조치를 과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방 차원에서도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자구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국가와는 달리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을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 김대영. (2010). 지방소득세의 성격과 발전과제. 「e-KRILA FOCU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용식·강동식·원구환. (2006). 「지방행정론(개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 우명동. (2009). 복지서비스 공급과 정부간 재정관계에 관한 소고: 분권교부세가 복지서비스공급의 차별성에 미친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14(1): 91-121.
- 원구환(2008). 새 정부 출범과 지방분권화 전략. 「공공행정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9(1): 103-123.
- 원구환(2009).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점증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1(3): 41-64
- 원구환(2009). 지방재정정책과 경기변동 대응분석: 재정팽창지수(Fiscal Impluse Indicator)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3(1): 115-132.
- 원구환.(2010).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 상관성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한국국정관리학회, 20(1): 49-71.
- 윤영진. (2008).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영희. (2010). 지방세분법의 의미 및 향후과제. 「e-KRILA FOCU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병호. (2009).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울산의 정책방향 모색. 울산발전연구원, 발표논문.
- 최병호.(2010).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와 재원배분: 재정형평화 효과와 지방재정행위에 대한 영향, 지방분권심포지움 자료집, 147-176.
- Danziger, James N. (1976). Assessing Incrementalism in British Municipal Budget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 335-350.